

손해배상(기) 청구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원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16가단 00000	사건유형	손해배상(기)
원고	◇◇◇외 2	피고	인천광역시대표자교육감 외 3
화해권고결정일	2016. 10. 17.	비고	
사건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고 ◇◇◇, 피고 ○○○는 이 사건 당시 2013. 5. 31. ◆◆공고 1학년 재학생으로, 당일 4교시 강당에서의 합창연습시간에 교실에서 게임을 함. - 게임도중 피고 ○○○는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◇◇◇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구타하여, 현재 원고는 음식을 씹지 못할 뿐만 아니라 냄새도 맡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어려움. - 이 사건 당일에는 합창연습 준비로 수업을 하지 않았으며, 교실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교사가 부재중이 아니었다면 이런 폭행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, 학교를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제기. 		
주 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, 피고는 위 취하에 동의한다. 2.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추후 다시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. 2.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중 2/3는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 		
청구취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고들은 연대하여 ◇◇◇에게 금 20,000,000원, 원고◇◇◆, 원고◇◇○에게 각 금 3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. 6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 		
판결이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이유 없음. 		